

I. 대한국국제의 의의

19세기 말 열강의 침탈이 노골화되어 국권이 백척간두에 섰을 때 고종이 느낀 위기는 한 왕조의 종말이 아니라 민족과 국가의 종말이었다. 이미 지축은 기울어져 갔으나 고종은 1897년 환구단에서 조선이 황제의 나라임을 하늘에 고하고, 세계만방에 대한제국의 성립을 선포하였다. 황제의 연호를 광무(光武)로 한 뜻은 조선의 위기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여야 자주 독립의 나라로서 국가를 수호할 수 있는지 깨우쳤기 때문이었으리라. 바야흐로 500년 문(文)의 나라 조선에서 강력한 무(武)의 나라 대한제국을 꿈꾸었던 것이다.

고종황제는 황국으로서의 규범적 기틀을 만드는 데도 심혈을 기울였다. 1899년 6월 고종은 법규교정소를 설립하고 7월 12일 국제(國制)의 제정을 명했다. 국제란 국가의 정치와 군권이 어떤 것인가를 밝힌 최고의 규범이다. 오늘날의 의미로 국제란 군주가 제정한 흥정헌법(欽定憲法)이다. 이렇게 하여 1899년 8월 22일 대한국국제가 탄생했다. 대한국국제는 다음의 의미가 있다.

첫째, 국호를 대한국으로 정하였다는 점이다. 대한이란 삼한의 통칭이다. 삼한이란 원래 마한, 진한, 변한을 말하는 것이었으나 후에는 고구려, 신라, 백제 전체를 모두 아우르는 한민족 전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되었다. 이로써 현대에까지 이르는 오늘날의 국호가 세계만방에 선포된 것이다.

둘째, 대한국은 세계가 인정하는 자주독립의 황제의 나라임을 분명히 하였다는 점이다. 약육강식의 제국주의 시대에 스스로 자주독립의 나라임이 세계에서 이미 공인되어 왔음을 만방에 알렸다. 또한 황제의 군권을 침해하는 신민에 대해서는 신민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함을 선포함으로써 황제가 보유한 권위를 유지하고자 하였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이미 형세는 조선의 독립이 열강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그들의 이해타산에 따라 어떻게 처리될지 모르는 운명이었다. 이와 함께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미 자국민으로서 외세에 영합하여 국권침탈을 도와 일생의 영화를 도모하는 극악무도한 세력이 있음을 황제는 극도로 경계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대한국국제는 황제가 입법, 집행, 외교의 전권을 향유하고 행사함을 구체적으로 선언함으로써 대한국은 명실 공히 황제가 지배하는 국가임을 분명히 하였다. 바야흐로 시대는 20세기 초입, 세계는 여전히 식민지 개척에 혈안이 되어 그 정점에 이르고 있었고, 국익을 위하여는 무참히 타국가·타민족의 생존을 위협하는 전쟁도 불사하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었으므로 당시의 민족의 안전을 확보하는 방법 으로서는 황제의 권위를 강화하여 국력을 강건히 하는 길 외에는 없다고 고종은 절감하였던 것이다.

II. 고종황제의 꿈과 3·1 독립선언

고종황제는 황제의 권위에 걸 맞는 황궁을 계획 하였다. 그리하여 덕수궁 내에 석조전의 건립을 명하였다. 이 석조전은 당시에 유럽을 비롯한 서구에서 유행한 제국주의 양식으로 최현대식 건물이었다. 비록 외국의 건축가의 손에 신황궁의 건축이 맡겨졌으나 대한제국 황제의 자발적 의사에 의해 만들어진 우리의 자주적인 현대식 궁궐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비록 석조전은 그리 화려할 것은 없으나 500년 전통의 조선 궁궐 속에 위풍당당하게 자리 잡은 모습이 대한제국의 새로운 흥룡을 기약해 볼 만한 것이었다. 석조전 내부의 황제와 황후의 침실 그리고 외교사절을 맞이하는 접견실 등은 당시 유럽 왕실의 가구들을 제작·보급했던 영국 메이플사의 최일류가구들로 장식되었다.

그러나 석조전은 일본이 대한제국을 강제로 병합한 1910년에야 완공되었다. 대한제국황실 권위를 표상하는 정점에 이르러 대한제국은 야수의 먹이가 되어버린 것이다. 일제는 대한제국 황실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대한민족으로부터 지난날의 기억마저 지워버리기 위하여 석조전을 무참히 침탈하였다. 다른 정궁과 마찬가지로 석조전도 미술관이나 박물관으로 개조하였고, 황실의 마지막 숨결이 묻어 있는 각종 가구들을 무단 반출하여 없애 버렸다. 석조전 내부에 이층으로 이르는 계단에는 양의 머리를 본뜬 듯한 문양으로 시작하는 놋쇠난간이 있다. 이 놋쇠난간은 100년 전 그대로다. 이 차가운 난간을 부여잡고 마침내 자신에 이르러 나라를 잃어버린 황제의 비탄은 얼마나 깊었을 것이며 식민지민으로 전락한 백성들이 겪을 고통을 얼마나 가슴아파하였을까. 지금 석조전은 대한제국황실박물관으로 일반에 공개되어 있다. 정부의 노력으로 석조전의 일부는 복원되었으나 여전히 대부분은 훼손되어 희미하게 복구되어 있을 뿐이다. 방 한 칸 밖에 전시된 황실의 가계도에는 조선의 마지막 왕후이자 후에 황후로 추증된 명성황후의 사진 자리가 비어 있다. 그 보다 수 십 년 앞선 사람들의 사진도 전해오고 있건만, 일제의 침탈로 위협받는 속에서 우리는 황후의 얼굴마저도 잃어버렸다.

황제는 씻을 수 없는 회한을 가슴에 품고 1919년 1월 21일 마침내 봉어하셨다. 나라를 침탈당하고

선왕을 뵈을 날이 없었을 황제의 원이 하늘에 닿았음 인지 황제 붕어로부터 40여일, 국권침탈로부터 9년 만에 민족이 드디어 깨어났다. 3월 1일 대한 독립을 외치는 만세소리가 서울을 중심으로 전국방방 곡곡에서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대한독립 만세!” 그 소리는 독립을 요구하는 소리가 아니라 대한이 독립국임을 선포하는 소리였다.

III. 대한민국 임시헌장 선서문의 의의 - 한민족의 세계시민정신을 만방에 고하다.

일제의 총칼을 두려워하지 않는 민족의 염원에 고무되어 경향각지와 세계 곳곳에서 음으로 양으로 독립의 길을 모색해 오던 선각자들이 하나로 뭉쳐 이국땅 상하이에 마침내 임시의정원과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발표하였다. 이날이 4월 11일이었다. 임시헌장의 선포문은 다음과 같다.

神人一致로 中外協應하야 漢城에 起義한지 三十有日에 平和의 獨立을 三百餘州에 光復하고 國民의 信任으로 完全히 다시 組織한 臨時政府는 恒久完全한 自主獨立의 福利로 我子孫黎民에 世傳키 위하여 臨時議政院의 決議로 臨時憲章을 宣布하노라.

이 임시헌장의 선포문에서는 그 연유가 3·1 독립선언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 선포문은 현대 헌법의 전문과 같다. 여기에서 임시정부는 3·1 독립선언을 국민의 신임으로 받아들이고 완전히 다시 통합된 임시정부를 조직하였음을 선언하고 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이 임시헌장에는 선포문 외에 특이하게도 선포문이 부기되어 있다. 선포문은 다음과 같다.

尊敬하고 敬愛하는 我二千萬同胞國民이여 民國元年三月一日 我大韓民族이 獨立을 宣言함으로부터 男과 女와 老와 少와 모든 階級과 모든 宗派를 勿論하고 一致로 團結하야 東洋의 獨逸인 日本의 非人道的 暴行下에 極히 公明하게 極히 忍辱하게 我民族의 獨立과 自由를 渴望하난 思와 正義와 人道를 愛好하는 國民性을 表現한지라 今에 世界의 同情이 翕然(흡연)히 我國民에 集中하였도다. 此時를 當하야 本政府-全國民의 委任을 受하야 組織되었나니 本政府-全國民으로 더불어 專心코 戮力(육역)하야 臨時憲法

과 國際道德의 命하난 바를 遵守하야 國土 光復과 邦基確固의 大使命을 果た하기를 茲에 宣誓하노라.

同胞國民이여 奮起할지어다. 우리 의 流하난 一適의 血이 子孫萬代의 自由와 福樂의 價이요, 神의 國의 建設의 貴한 基礎이니라. 우리 의 人道-마침내 日本의 野蠻을 教化할지오. 우리 의 正義-마침내 日本의 暴力를 勝할지니 同胞어 起하야 最後의 一人까지 關할지어다.

이 임시헌장의 선서문에 나타난 바를 보면 임시헌장은 다음과 같은 특별한 의의가 있다.

첫째, 1919년 3월 1일은 독립선언의 날이라는 점이다. 독립은 자주적 민족이 스스로의 결의에 따라 자신의 역사와 전통이 뿌리 내린 곳에서 스스로 국가를 영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누구의 허락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결단에 따른 것이다. 1919년 3월 1일 대한민족은 독립을 선언함으로써 독립의 국가가 되었음을 공포하고 있다. 거기에는 일본의 허락을 요하지 않는다. 1945년 8월 15일은 독립의 국가에서 침략자들을 종국적으로 몰아내어 가려진 역사를 양지로 들어낸 광복의 날일 뿐이다.

둘째, 대한국의 국가 정체를 민국으로 하였다는 점이다. 이로써 대한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명백히 이행되게 되었다. 1919년으로부터 우리나라는 전제군주의 국가에서 국민주권의 국가가 되었다.

셋째, 1919년 3월 1일을 민국원년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한민국의 탄생이 1919년 3월 1일에 이루어졌음을 명백히 하고 이를 선서하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역사에는 가정이 없다고 하나 민국으로의 전환이 좀 더 일찍 이루어졌더라면, 그리하여 민중의 각성이 좀 더 일찍 시작되었더라면, 국가를 침탈당하는 치욕은 덜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은 남지만, 강제병합 이래 10년이 가기 전에 한민족의 각성이 그에 이르렀음을 보여준 3·1 독립선언은 가히 세계의 민족자결주의를 선도한 운동으로서 대한민국 건국의 정신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넷째, 민족의 일치단결을 호소하면서 무엇보다도 남녀·노소·계급을 들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야 한다. 여기서는 조선말기로부터 이루어진 남녀·노소·계급간의 차별이 5천년 역사의 단일민족을 분열로 이끌어 마침내 망국으로 이르게 했다는 점에 대한 반성을 찾아 볼 수 있다. 민족의 독립을 희구하는

데는 아무런 차별이 없다. 그런 만큼 독립된 국가에서는 다시는 부당한 차별이 있어서는 되지 않음을 만천하에 선언하고 있는 것이다.

다섯째, 광복을 이루는 데는 종파간의 차별이 있을 수 없다는 점을 선언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독립선언에 많은 종교지도자들이 참여하였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민족을 하나로 뭉칠 수 있는 힘은 신앙의 힘 외에는 없었을 것이다. 국가를 초월하여 민족성에 깊게 뿌리 내린 신앙의 힘을 독립의 힘으로 승화시키기 위해서는 종파를 초월하는 것이 단연 필요하였던 것이다. 결국 종교 다원주의가 대한민국이 건국정신이 되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여섯째, 유럽을 전쟁의 비참함으로 몰고 간 독일의 제국주의적 작태를 이미 평화를 애호하는 한민족은 적확하게 직시하여 일본을 동아시아 평화를 침해하는 호전적 세력으로 단죄하고 그 비인도적 폭행을 규탄하고 있다는 점이다. 제국주의의 침략을 단순한 국가 간의 이권 다툼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를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비판하고 도저히 취할 수 없는 국가라고 저적하고 있는 것이다. 이로써 타민족의 불행위에 자국의 행복을 구축하지 않겠다고 한 5천년 역사의 민족의 정신을 선서문은 명확히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일곱째, 여느 민족과 마찬가지로 한민족도 민족의 독립과 자유를 너무나 갈망하고 희구하나 그 방식은 매우 공명하고도 인내심 있는 정의와 인도의 길을 가고자 함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점이다. 국가 간에 있어서 비인도적 폭행에는 그에 상응하는 폭행도 용인하는 것이 당시의 시대적 조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의와 인도로서 공명하게 인내하면서 대처해 가겠다는 선각자들의 정신은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긴긴 세월 속에서 숙성된 민족의 정신이었던 것이다.

여덟째, 국토광복을 위하여 한민족이 스스로에 부여한 사명과 행동은 모두가 임시헌법과 국제도덕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명백히 하고 있다는 점이다. 무질서한 폭도로서가 아니라 균형 잡히고 체계화된 하나의 정당한 국가로서 국제도덕에 부합하여 임시헌장을 제정하였음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다.

아홉째, 광복을 위한 우리의 노력은 어디까지나 자손만대의 자유와 복락을 위한 것이고, 신의 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것임을 선언하고 있는 점이다. 전래의 국토로부터 일체를 물리치는 것은 자신의 영달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두 미래를 위한 것임을, 그리고 후손들의 자유와 행복을 위한 것임을 사명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의 광복을 위한 일체의 투쟁이

결국은 신국을 건설하기 위한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점에서 독립선언의 송고함을 찾아 볼 수 있다. 여기서 신이란 특정 종교의 유일신을 의미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독립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경건과 신성을 드러내는 선언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해석하여야 종파를 초월하여 광복을 도모한다는 선언과도 부합하기 때문이다.

열 번째, 선서의 마지막에 가서 비로소 국권 침탈의 원흉, 일본을 언급하고 그들의 야만과 폭력에 대해 싸우되 우리의 무기는 인도와 정의임을 선언하고 있다는 점이다. 원흉을 선서의 마지막에 언급한 것은 우리의 종국적 목표는 원흉의 타도라는 원한에 기초하는 것이 아니라 후손을 위한 신국 대한민국의 건설에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일본의 야만을 인도로 교화하겠다는 결의에서, 일본의 폭력은 정의를 무기로 싸우겠다는 결의에서 더욱 명백히 드러난다.

세계는 과학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상호의존적으로 급변하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지구촌의 도덕이 필요한데 그것이 소위 세계시민성이다. 향토에는 향토주민으로서의 덕성이 요구되고 국가에는 국민으로서의 윤리가 요구된다. 그렇지 않으면 향토도 국가도 존립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상호의존성이 급격히 강화되어 가고 있는 지금, 다원적 세계의 평화적 공존을 위해서는 세계시민으로서의 윤리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그런데 세계시민성이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그 핵심은 정의와 인도 이외에 다른 아니다. 더구나 최근에 국제사회는 이익사회의 경향이 강화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국가이익을 위해서는 전쟁도 불사하는 대결 국면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세계적 규모로나 국지적으로 무력에 의존한 분쟁을 촉발시켜 자살테러라는 새로운 형태의 인륜 파괴적, 도덕 파괴적 도전이 상시화 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를 예견하였음인지 이미 100년 전 대한민국 임시헌장의 선각자들은 정의와 인도라는 세계시민의 핵심을 민족의 정신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였다. 아니 세계시민적 가치에 기반 한 민족의 전통정신을 확인하였다고 하는 것이 보다 정확하겠다.

IV. 임시헌장의 내용-제헌헌법의 뿌리

이러한 선서와 함께 선각자들은 10개조로 된 임시헌장을 선포하였다. 임시헌장의 의미는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첫째, 제1조에서 나라의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명기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민주공화국임을 선언하고 있다. 민주주의와 공화국의 역사는 서구에서도 이미 오래되어 수 천 년에 이르나, 현대 헌법에서 민주공화국을 선언한 것은 이 임시헌장이 최초라고 보고되고 있다. 이 규정은 1948년 대한민국 제헌헌법의 제1조에 그대로 계승되었다. 대한민국헌법의 모든 조항은 이 조항으로 들어가고 이 조항은 130개 헌법조항으로 펼쳐지고 있다. 민주공화국의 의미를 어떻게 구현해 가는가에 따라 대한민국의 정신사의 흥망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민주공화국은 주권의 관점에서 보면 당연히 국민주권의 국가다. 그러나 국민주권은 임시헌장에 존재하지 않는데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국민주권의 사상도 1919년 9월 11일 제1차 개헌에서 대한민국의 주권은 대한인민 전체에 있음(제2조)을 선언하여 명확히 하고 있다.

둘째,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임시헌장의 본문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인민의 인권과 관련한 조항이 바로 평등조항이라는 점이다. 그 중에서도 남녀·귀천·빈부·계급의 차별이 없음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다. 근대국가 조선은 각종 신분의 차별로서 망국에 이르렀다고도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서구에서는 이미 18세기 혁명을 통하여 국민주권이 자리 잡아 갔다. 18세기 세계를 휩쓴 혁명은 시민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는 혁명이었음을 상기할 때, 대한민국의 건국정신은 무엇보다도 단연 차별 없는 사회가 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차별철폐에 대한 열망과 방식의 차이가 오늘날 남북한 분단의 먼 원인이 되었음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이로 볼 때 대한민국헌법이 모든 영역에서 부당한 차별을 어떻게 해소해 갈 것인가는 앞으로도 민족의 운명을 가르는 핵심적 요소가 될 것이다.

셋째, 임시헌장은 당시 민족에게 필요한 여러 자유권을 선언하면서 특히 신교의 자유를 가장 먼저 내세우고 있다는 점이다. 이미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는 독립선언에 직접 참여한 많은 종교지도자들의 영향이기도 하겠지만, 독립의 함성으로 삼천리 방방곡곡을 메울 수 있었던 것은 인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심에 의존하였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독립된 대한민국이 신국을 지향한 만큼 인민 개개인의 신앙은 소중한 민족 정신력의 근원이 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런 점에서 오늘날 국가나 공직자의 종교적 편향이 심심치 않게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건국의 정신을 충분히 육화시키지 못한 자의 국가관에서 비롯된 잘못이다.

또한 이러한 민족 정신적 전통을 고려해 볼 때 1948년 제헌헌법에서 신앙의 자유를 규정한 것은 너무나 당연하며 나아가 국교의 부존재와 정교분리를 규정한 것은 이러한 전통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넷째, 신의 의사에 의하여 건국한 신성한 대한민국이 나아가 세계를 위해서는 인류의 문화와 평화에 공헌함을 선언하고 있다. 인류의 문화와 평화에 공헌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국제사회에서의 불변의 근본방향임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제연맹에 가입하여 적극적으로 세계사의 일원으로서 인류문화 창달과 일대 평화세력으로 나아가겠다는 의지가 결연히 드러나 있다. 이래 이 역사는 짧게는 이미 백년을 전통으로 우리의 유전자에 각인되어 왔다. 향후로도 국가운영의 근본방향으로서 삼아가야 한다. 그것이 앞에서 언급한 한민족의 세계시민성에 부합하는 것이다.

끝으로, 사소한 것으로 보일 수 있을지 모르나 임시헌장에서는 사형제를 폐지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사색을 필요로 한다. 우리의 도덕으로는 죽어 마땅한 사람이 있을 수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죽어 마땅한 사람이라도 이미 국가적 통제 하에 있으며 더 이상 만행을 저지를 것이 봉쇄되어 있는 자가 사형수다. 물론 그러한 자를 사회로부터 격려시키는 것은 마땅한 일이나 그것을 어떠한 방식으로 할 것인가는 사회적 합의에 따르면 될 것이다. 사형수를 제도적으로 사형에 처함으로써 한 생명을 절멸시킬 권한이 국가에게 있는지, 임시헌장 100년을 되돌아보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V. 임시헌장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작년 나는 세계헌법학회의 학술회의 참석차 중국 상하이로 방문한 적이 있다. 미처 인식하지 못했지만 호텔에 도착해 보니 마침 그날이 4월 13일(현재는 4월 11일로 수정됨) 임시정부수립일이었다. 절묘한 우연에 기쁜 마음으로 시간을 내어 임시정부청사를 방문했다. 3층 연립주택건물의 일부를 빌려 정부청사로 사용하였다. 오래된 이발소에서나 볼 수 있는 듯한 세면대와 자그마한 술이 걸린 부엌, 층계를 올라가서 놓여 있는 왜소한 침대와 나무 책상과 탁자 등, 이름만 들어도 존경심이 일어나는 선각자들이 지낸 곳이라고 보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전시된 육필원고의 임시헌장 개정 초안에서는 아직도 선각자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하였다. 이곳에서 그들은 일제의



추적을 피해가면서 광복의 꿈을 꾸어 갔을 것이다. 거기서 나는 한국평론(KOREA REVIEW)이라는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독립투사들이 발행한 잡지가 전시되어 있는 것을 보았다. 그런데 그 잡지의 부제가 대한민국의 정치적 자유와 종교적 자유를 위한 월간지(A Monthly Journal devoted to the Cause of Political and Religious Freedom for Korea)로 되어 있었다. 식민지로 전락한 고국의 정치적 독립은 이해가 되었으나 종교적 자유라는 것은 다소 의아했다. 초라한 임시정부청사를 뒤로 하고 나는 이튿날 아침 일찍 홀로 장쩌민 주석이 졸업하였다는 상해교통대학 캠퍼스를 거닐었다. 공산국가라고 하지만 전통의 대학다운 품격이 있는 그 모습이 당당해 보였다. 로스쿨이 들어선 웅장한 법학관에는 많은 외국인들이 들락거리고 있었다. 2,500만에 이르는 상하이 인구에도 불구하고 외국과의 합작으로 만들어진 유명 브랜드 자동차가 누비는 도로는 질서가 잡혀있었고, 관광객들은 몰려들어 거대 호텔이 계속해서 들어서고 있었다. 어디를 보나 규모나 질이 예전과는 달랐다. 거대하게 부상하는 중국과 비교하면서 우리 선조들이 피땀 흘려 이룬 독립 100년, 광복 74주년을 맞은 지금 우리는 무엇을 이루었는가라는 생각이 귀국하는 비행기 안에서 내내 떠나지 않아 마음이 편치 못했다. 그런데 문득 상해임시정부청사에서 본 한국평론의 부제가 떠올랐다. 정치적 자유와 종교의 자유가

만개한 대한민국! 그로부터 100년, 지금 우리는 지금 아시아의 민주주의 꽃의 나라가 되었고, 종교의 자유가 세계 어느 곳보다 보장되는 국가가 되었다. 그렇다면 앞으로 100년, 오늘의 우리는 후손들에게 어떤 국가를 물려줄 것인가. ***